#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37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민홍철・신정훈・김민기

김정호・설 훈・노웅래

서삼석 • 유재갑 • 김민철

이상직 • 박완주 • 임종성

의원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군사망사고의 정의 중 군인의 범위에 구「병역법」상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한 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사고 또는 사건의 범위도 2018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후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망사고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과 군사 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 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법률 제 호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를 "[「병역법」(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 및「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3년으로"를 "5년으로"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직권조사)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20 21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37조 중 "제129조부터"를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5435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유효기가 경과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망사	제2조(정의)
고"란 군인(「병역법」 제25조	<u>[</u> 「병역법」(법률
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u>다)</u> 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을 말한다) 제24조 및「병역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u>자를 포함한다]</u>
또는 사건(1948년 11월 30일부	
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	
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	
다)으로서 제3조에 따라 설치	
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가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762	
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제외한	
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u>3년으로</u> 한	④ <u>5년으로</u>
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 ⑪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 ⑪ (생 략) <신 설>

<신 설>

제18조의2(직권조사) 위원회는 제 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 는 사고 또는 사건(2021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 건을 말한다)에 관하여 직권으 로 조사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 보 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 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 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항 및 제12항 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나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

#### <신 설>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 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률 제15435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u>3년간</u> 효력을 가진다. <u><단서</u> 신설>

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	니
<u>된다.</u>	
제36조의2(사무국의 존속기간)	사
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	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u>স</u> ু	<u>12</u>
<u>7조 및 제129조부터</u>	
법률 제15435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u> 5년간</u> <u>다만, 제</u>	11
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
른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유	<u>효</u>
기간 경과 후 3개월까지 효	력_
을 가진다.	